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52215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권대열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E 제2층 F호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들은 각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D은 원고에게 G 주식회사가 남양주시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골재채취업등록증과 D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I지구 사토장 개발공사를 도급받은 공사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I지구 사토장 개발공사계약이 체결되어 H 주식회사에 공사계약권이 있는데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6. 3. 3.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468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7.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원고가 D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판결금 채권은 2022. 7. 14. 기준으로 329,424,656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D의 아버지 J는 2020. 10. 8. 사망하였고(이하 J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D(상속지분 2/11), 피고들, K과 배우자인 L1) 이 있다.
- (2) 피고들과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1. 26. 망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지분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28.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채무 초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D의 구체적 상속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D의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D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호(이하, 'M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K에게 경기도 광주시 O 임야 4970㎡(이하, 'O 임야'라 한다)와 서울 중구 P 제3층 Q호(이하, 'P 상가'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5. 자 2013스195 결정 참조).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D에게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600만 원, 2001. 9. 21. 등기)이 설정되어 있던 M 아파트에 관하여 2006. 2. 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M 아파트의 2020. 10.경 매매매가(일반평균가)는 3억 8,500만 원 정도인 사실, 망인은 K에게, O 임야에 관하여는 2011. 7. 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4., P 상가에 관하여는 2019. 4. 16.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O 임야를 22,911,700원, P 상가를 340,00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K이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의 물가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치와 대비하여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위 각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료로 생활을 해온 망인이 피고들까지 지원할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D, K에게 위 각 부동산을 준 것은 망인의 자산, 생활수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중 D, K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서 D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상속분 산정

(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나) D이 증여받은 M 아파트의 상속개시 무렵 매매가가 3억 8,500만 원, K이 증여받은 O 임야와 P 상가의 증여가액이 합계 362,911,700원(= 340,000,000원 + 22,911,700원)인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억 4,70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 107,379,690원[= {(이 사건 부동산 347,000,000원 + M 아파트 385,000,000원 - M 아파트 근저당 채권최고액 96,000,000원 + O 임야 및 P 상가 362,911,700원) × 2/11} - (385,000,000원 - 96,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2).

(4)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1) K과 L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4. 5. 31. R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서울 종로구 S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중 적어도 2억 5,000만 원을 L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돈을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D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 61,925,145원[= {(347,000,000원 + 385,000,000원 - 96,000,000원 + 362,911,700원 + L 250,000,000원) × 2/11} - (385,000,000원 - 96,000,000원)]이므로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